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기준:

2022-12-13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구분 | 비공개 대상 기준 |
|-----|--|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
| 제6호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요할 경우 공개 가능 |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경영지원부 | 경영계획 | 종합경영계획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직제 관리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조직 운영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이사회 운영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 이사회 안건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 | 경영 공시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대외 요구자료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 요구자료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 | 예산관리 | - 예산편성 및 관리 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규정관리 | - 내규 제·개정 관련 내부의사결정 내용 | 제5호 | |
| | | 정책 등 연구관리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 제7호 | |
| | | 회계관리 |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 -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한 기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 제5호 |
| 자금운용 | - 기본재산 및 기타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한 기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 | | 제5호 제7호 | | |
| 재무 관리 | - 재정 현황 및 시스템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7호 | | |
| 지출업무 | - 경비 지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지급내역 등 거래상 상대방에 관한 정보 | | 제6호 | | |
|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 | 제7호 | | |
| 결산업무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세금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 제1호 |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세무업무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 서류 등 관련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 | | | -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 | 회계·세무 자문에 관한 사항 | -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 성과관리 | 경영평가 |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 |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당해 평가 지적사항 및 그 후속조치 | 제5호 | |
| | |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평가 및 보상 | - 개인별 근무평정, 보상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평가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정규직 및 정원의 인력 등의 개인근무평정 내역, 수습직원 근무평가내역·결과 - 포상추천자 명단 | | 제6호 | | |
| | 인사관리 | 인사제도 종합운영 | - 임직원의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임직원 인사관리 |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예외 |
| - 임직원 교육훈련·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자료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제5호 | | |
| 인사위원회 운영 | | - 임직원의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채용 관련 사항 | | - 임직원 채용, 총원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자료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 시험원서, 답안지, 합격자명단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정보 | 제6호 | |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복무관리 | - 개인에 대하여 병가 및 휴직 사유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 | |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 | - 임직원의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지급 및 4대보험 관리 | - 경비 지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지급내역 등 거래상 대방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인권·윤리 및 청렴 |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 -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기관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각 위원회 운영 | - 위원회 안건에 포함되는 주요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기관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제5호 | | |
| 계약관리 | 입찰 관련 | -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 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참가심정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등) | 제5호 제7호 |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 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 | | - 협상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협상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 | | -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등 | 제5호 | | |
| | | -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제7호 | | |
| 총무 | 직인 및 인감관리 | - 공개될 경우 위·변조 위험,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 | 인턴 및 실습생 관리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
| | 정보공개운영 |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 제6호 |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안전 | 사무국관리 | - 사무국 도면 | 제3호 | |
| | | |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2호 | |
| | | | - 긴급상황 비상대응 방침 | 제5호 | |
|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평가 및 취약점 점검 결과 등 공개 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 | | - 보안 취약 점검에 대한 사항,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개 될 경우 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 | | - 보안성 검토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보안진단사업에 대한 사항 등 공개 될 경우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감사업무 | 감사 계획 및 수행 | - 감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감사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시감사 업무계획 등) | 제5호 | |
| | |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감사·조사 관련 정보, 징계직원 정보 | 제6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감사 종료 후, 비공개 사항 제외한 감사결과 공개 |
| | | | - 감사 후속조치 결과 중 관련 업체 정보 | 제7호 | |
| | | 공익신고 처리 | - 공익신고자 정보 | 제2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신고 내지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들의 비밀보장의무) 준수 |
| 사업운영부 | 장학사업 | 사업 기획 및 총괄 계획 | - 사업 기획, 주요현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 제도 기획,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장학 제도 | - 장학사업 제도 등 관련 회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 -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서박 계획 | | |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인력관리 | - 장학생 선발계획 회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중 취득한 개인정보로 공개 될 경우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6호 | | |
| |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회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 |
| | | 장학생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제7호 | |
| | | | - 참석 위원 및 회의 내용 등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장학금 신청·선발·집행·반환(학생) | - 참여 학생의 개인별 신청·선발·집행·반환 정보 등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적,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등) | 제6호 | |
| | | 장학금 신청·선발·집행·반환(학교 등) | - 장학생 추천인 성명 및 개인정보 | 제6호 | |
| | | | - 사업 참여 학교의 개인별 신청·선발·집행·반환 기준 및 정보 | 제7호 | |
| | | 장학금 지급 |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될 경우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계좌번호, 지급 내역 및 금액 등) | 제6호 | |
| | | 장학사업 운영 | - 장학사업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 - 장학사업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사정이 포함된 자기소개서 및 장학금 신청서 등) | 제6호 | |
| | | 사후관리 | - 장학사업 사후관리 중 취득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 | | - 장학사업 사후관리 중 취득한 경영·영업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사업 성과 | - 장학사업의 평가 및 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 | 장학금 관련 민원 대응 | - 민원내용 등과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적사항 등 공개 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 | 대외기관 관리 | - 대외기관과의 협약 등 업무과정에서 발생항 경영·영업정보로 공개될 경우 대외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 | 단기근로자 운영 | - 단기근로자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 성장지원사업 | 사업 기획 및 총괄 계획 |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기획, 주요현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프로그램 운영 | - 선발 관련 사항으로서 심사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 |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정보 | 제6호 | |
| | |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제7호 | |
| 홍보 | 사업 기획 및 총괄 계획 | 광고 등 대외홍보 업무 | - 사업 기획, 주요현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판단 |
| | | 광고 등 대외홍보 업무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 추정 정보, 과업 사항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 | | | - 제안서평가위원 정보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정보 | 제6호 | |
| | |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 제7호 | |
| | | 유관기관 등 대외 협력 업무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 제7호 | |
| | | | -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서울장학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구분 | 소관사항 | 업무종류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법규 | 비 고 |
|------|------|-----------|---|------|-----|
| | | 홍보 기획단 운영 | - 지원서류, 면접결과, 합격자 명단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정보 | 제6호 | |
| | | |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 제7호 | |